

2024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분담금 집행계획

1. 근거

○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예산회계)

- ① 협의회의 회의운영, 조사,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분담금
 - 2.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보조금
 - 3. 사회공헌사업 관련 수입
 - 4. 기타수입
- ② 제1항제1호의 분담금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 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분담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투자출연기관 간의 부담은 균등 분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세입·세출예산은 실무협의회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본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매년도 결산은 사무처장이 결산검사 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실무협의회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본협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의 분담금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⑦ 제1항제3호 수입은 특별회계로 별도 분리 운영한다.

2.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분담금

○ 투자출연기관 분담금 총액: 금492,686,000원

○ 투자출연기관 분담금 예산편성(2023년 제4차 실무협의회 심의·의결 통과)

기관별 분담금액(교육훈련비 제외 정액85%-정률15% 분담)			
투자기관명	분담금액(원)	출연기관명	분담금액(원)
서울교통공사	55,330,000	세종문화회관	28,860,000
서울시설공단	34,530,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8,270,000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8,590,000	서울시복지재단	28,300,000
서울주택도시공사	30,300,000	서울시립교향악단	28,260,000
서울에너지공사	28,450,000	서울디자인재단	28,250,000
서울의료원	31,240,000	서울관광재단	28,250,000
서울경제진흥원	28,850,0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28,036,000
서울신용보증재단	28,800,000	서울문화재단	28,370,000
합계(원)		492,686,000	

- 예산과목 : 투출노사정협의회, 투출노사정운영비, 사무처운영비

3. 집행 계획

- 2024년 노사정협의회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합 계		600,460	
투자출연기관 분담금	사무처 운영비	492,686	
서울시 분담금	회의 및 사업비	107,774	(미정)

- 집행 원칙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의 민간보조금 집행 제규정에 준하여 집행
- 년 1회(1월) 투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요청하여 집행하고 연말 일괄 정산

- 집행 용도

구 분	상 세 내 역
사무처 임차료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인건비, 연차수당, 평가급 등
복리후생비	4대보험, 건강검진비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수수료
수당	투자출연기관 파견직원 수당 등
여비	출장여비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등
공기구비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행사 및 기타 운영비	종무식, 체련대회 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업비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프로그램, 토론회
교육훈련비	노사관계 전문교육 과정

4. 분담금 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 매년도 결산은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본협의회에 보고
- 집행잔액 발생시 익년도 이월

5. 협조사항

- 기관별 분담금 요청금액과 실 편성액이 다른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분담금액 조정 협조 공문을 협의회에 제출

<참고>

기관명	요청 금액	실 예산편성액	비고(사유)
서울○○재단	00,000천원	00,000천원	

- 이후 협의회는 예산을 조정하여 2024년 1차 실무협의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2024년 투자출연기관분담금 확정 계획